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자치행정과	1

(2013. 10. 24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10월 15일

나. 의안번호 : 13-75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고령자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(1) 안 제4조제2항,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통·반장 위촉자격 연령상한 규정을 삭제함.

	개정 전	개정 후
통장	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	30세 이상의 주민
반장	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	20세 이상의 주민

(2) 안 제7조의2에서는 통·반장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 유지 규정을 신설함.

(3) 기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함.

[검토의견]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의 「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방안」에 따라 통·반장 위촉자격의 연령상한 규정을 삭제하고, 통·반장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,

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